

2018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워크숍 보고서

작성자 : 박유민(경상대학교)

세션명	워크숍8. 혐오발언과 표현의 자유 사이		
일시	2018.7.5.(목) 15:15~16:45	장소	서울창업허브 세미나실3 (9F)
참석자	사회	손지원(오픈넷)	
	패널	김보라미(법무법인 나눔)	이승현(연세대학교)
플로어	약 19명 참여		

제안내용	혐오 표현의 개념을 확실히 정립하고, 혐오 표현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규제를 해야 할까?
요약내용	<p>최근 몇 년 사이에 혐오 표현이라는 이슈가 대두되고 있다. 혐오 표현이 야기하는 문제들이자 해악성은 그냥 욕설을 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하는 행위들은 현행 법 상으로도 명예 훼손 죄나 모욕죄에 해당하고, 표적 집단의 구성원들의 존엄성이 침해받는다는 것과 공론장의 왜곡, 표적 집단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영속적인 불평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이 많은 혐오 표현을 무조건적으로 규제하려면 표현의 자유라는 걸림돌이 생긴다. 혐오 표현을 잘 규제할 수 있으려면 혐오 표현의 개념을 확실히 정립하고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하는지를 먼저 정한 뒤에 그 사이에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어떠한 비하 혹은 폄하 발언을 들은 뒤 듣고 난 후 기분은 당연히 나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된다거나 밤에 잠에 들기 무섭다거나 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는 혐오 표현으로 봐야 한다. 규제에 대한 측면은 크게 혐오 표현을 크게 개인에게 오는 일시적인 표현과 선동적인 표현으로 나누었을 때, 전자는 현행법상으로도 모욕죄와 명예 훼손 죄가 성립되지만, 선동적인 표현과 특히 인종, 민족, 종교, 장애, 성별, 성적 지향 등에 기한 표현들은 형을 높여야 한다. 혐오 표현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규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가 훨씬 더 필요하다. 그리고 이념적 지역적인 혐오 표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어떤 소수자 집단이 또 다른 소수자 집단에 대해 하는 혐오 표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한 논의 역시 필요하다.</p>

논의 세부 내용

(이승현)

혐오 표현은 최근 들어 많이 듣게 되는 단어다.

혐오 표현은 hate speech라는 단어의 번역이다.

표적 집단이라는 혐오 대상이 되는 집단에 대해 편견이 생기고, 편견이 더 나아가 구체적인 행동이 나타나게 되고, 사회적 제도적인 차별이 생기게 된다. 이를 기반으로 폭력 행위가 나타나게 되고, 마지막으로 제노사이드가 나타나게 된다. 가장 먼저 생기게 된 협약은 인종 차별에 대한 협약이다.

인종의 집단에 대한 폭력행위나 이를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요청하는 협약이다. 이 협약 이후에 소위 혐오 표현 규제법들이 생기기 시작한다.

혐오 표현의 개념을 확실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인종, 민족, 종교, 장애, 성별, 성적 지향 등에 기하여 역사적으로 차별을 받아 온 민족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기반으로 한 적대적 표현 행위이다.

이러한 속성들은 개인의 인격을 반영하면서도 변화 불가능 속성들이다.

차별이 장기간 동안 지속되어 와서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차별이 반영되어져 오는 집단들을 표적 집단으로 정의할 수 있다.

혐오 표현의 유형을 나누면 선동을 하는 표현과 직접적으로 비하나 폄하의 표현을 하는 표현으로 나눌 수 있다.

선동을 하는 표현들은 보통 직접 모욕을 하는 표현들은 없지만, 사실주장을 하거나 사실 왜곡 주장을 하는 표현들이 많다. 따라서 정치적인 뜻을 띠고 있는 표현들이 많다.

그냥 욕설을 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하는 행위들은 현행 법 상으로도 명예 훼손 죄나 모욕죄에 해당한다.

혐오 표현의 해악성이 지닌 문제점들은 표적 집단의 구성원들의 존엄성이 침해받는다는 것과 공론장의 왜곡, 표적 집단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영속적인 불평등이 있다.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외국의 사례들은 일본 같은 경우 기본법에 속해 처벌에 대한 내용이 없다. (인종에 한정하여)

다양한 국가에서 혐오 표현 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결국 공통된 뜻은 다양한 형태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하고, 형사 규제는 마지막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손지원)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해야하고, 규제해야 할까?

과연 인터넷 상에서 혐오 표현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 글의 유통을 막을 권리가 있는 것인가? 이를 국가가 규제해도 되는 것일까?

(김보라미)

인간이 본능과 관계된 것을 보았을 때 혐오감을 느끼는데 특히 본인보다 아래에 위치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이를 더 많이 느끼게 된다.

제노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형사 처벌로 엄중하게 다뤄야한다.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적당한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를 통해 보호가 필요하다. 사회적 약자들은 심리적 피해를 보고 있고, 사회적으로 배움이 필요하다.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데에 현행 법 상에서는 조금 더 규제가 필요한 것 같다.

(이승현)

미국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는 법은 최대한 만들지 않으려는 입장이고, 유럽은 당연히 규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혐오 표현이 가져오는 해악이자 문제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개인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혐오 표현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방법의 예시로 어떠한 비하 혹은 폄하 발언을 들은 뒤 듣고 난 후 기분은 당연히 나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된다거나 밤에 잠에 들기 무섭다거나 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는 혐오 표현으로 봐야 한다.

(손지원)

혐오 표현에 대한 기준이 추상적이어서 구체화를 어떻게 시키면 좋을까? 선동적인 표현에 한정을 해야 할지 아니면 개인에게 오는 명시적인 표현들도 규제를 해야 할지?

(이승현)

혐오 표현의 유형을 크게 나누면 선동을 하는 표현과 실제적인 표현이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4개의 표현으로 나눌 수 있다.

실제적인 표현은 명시적이거나 비하하는 용어의 유무로 나눌 수 있다. 선동을 하는 표현은 사실 주장에 대한 내용이거나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 있다.

(김보라미)

역사적인 사회적인 맥락이 있어야한다.

혐오표현은 단순히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어떠한 집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생긴다.

단순히 개인에게 오는 혐오표현은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 하지만 집단 자체에 대한 혐오표현은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

(손지원)

행위를 선동하는 표현과 객관적인 명제를 전달하는 표현, 명시적인 비하적인 표현으로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를 어떻게 규제해야 할지 결정하기 어렵다.

혐오 대상, 표적 집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정할 것인가?

사회적 소수자와 다수자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무슨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이승현)

개인적인 결론은 소위 이야기하는 남성혐오 표현 같은 경우는 모욕죄나 명예 훼손 죄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여성이 타겟이 되는 표현은 혐오 표현이 되고, 남성에게 향하는 표현은 모욕죄나 명예 훼손 죄가 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약자에게 향하는 표현은 혐오표현이 되고, 강자에게 향하는 표현은 모욕죄나 명예 훼손 죄가 된다고 생각한다.

프랑스의 경우 기본적인 혐오 표현은 경범죄로 두고 모욕죄나 명예 훼손 죄에 해당하게 하고, 인종, 민족, 종교, 장애, 성별, 성적 지향 등을 기반으로 한 명예 훼손은 따로 분류하여 형의 무게를 높인다.

이념적 지역적인 혐오 표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어떤 소수자 집단이 또 다른 소수자 집단에 대해 하는 혐오 표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

부정적인 전형화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면 일상 속에 들어가서 특정 집단에 대한 전형화가 지속되고 전승되면 자연스럽게 법이나 제도 속에 스며들고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단계까지 오게 된다. 이 때 특정 집단을 표적 집단으로 봐야한다. 따라서 역사적 사회적인 맥락을 같이 봐야한다.

혐오 표현이 사회적으로 불안정하거나 과거에는 보이지 않던 이질적인 존재들이 갑자기 가시화되었을 때 생긴다.

(플로어)

대학교 커뮤니티를 운영해 본 경험이 있어서 커뮤니티 운영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해당 대학교 학생들만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 보장된 경우, 다시 말해 폐쇄형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혐오 표현은 방조하는 경우가 평

장히 많고, 이에 대해 운영자가 조금이라도 규제를 하려고 한다면 반발이 심하다.

커뮤니티에서는 혐오표현을 확산해 나가는 현상이 많고, 신고가 들어왔을 때 단순히 블라인드를 시키면 된다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려고 한다.

지금 인터넷을 사용하는 1020 세대들은 이 혐오 표현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며, 새롭게 인터넷 유저가 되어 인터넷 공론장 관리자들이 된 사람들은 이 공론장을 어떻게 받아서 이어갈 수 있을까?

(김보라미)

사실 인터넷 공론장에서의 논쟁과 법률 분쟁은 결을 달리 한다.

인터넷 공론장에서는 지금까지 늘 혐오 표현이 존재해 왔고, 이들에게 관심을 주지 말라는 말들이 있었을 정도로 오래 전부터 혐오 표현이 존재해왔는데, 이들이 표현하는 것을 막아서 역사적으로 해결해왔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회에 각각의 커뮤니티들이 좀 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면 좋겠다.

(이승현)

규제를 둔다고 하더라도 규제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이 전제 조건은 사람들의 인식 변화이고, 시민 교육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초중고에서 이미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시작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여기가 국가가 개입해야할 지점이다. 국가가 인식 변화를 위한 캠페인과 같은 것에 지원을 해야 한다. 혐오 표현에 대해 “이것이 혐오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혐오 표현에 대한 대항 언론을 키우기 위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질의응답>

(플로어)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고, 혐오 표현을 허용하는 것 역시 기본권인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 두 기본권이 충돌을 할 때 어느 기본권에 우선순위를 뒤야하느냐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보고 규제를 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인권들의 순위를 구별을 해야 할까가 첫 번째 고민이고, 두 번째는 이것을 법으로 가져가면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이다. 법으로 무언가를 정하기 시작하면

법으로 정한 것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한계가 명확하다. 따라서 이를 법적 규제로 막는 것이 올바른 접근 방식일까라는 고민이 생긴다.

차별 금지법을 널리 알리고 싶다. 차별 금지법이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다.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따라오는 교육 효과도 있다. 이런 식의 논의 구조를 어떻게 하면 가져올 수 있을까?

(손지원)

표현들을 직접적으로 막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혐오 표현에 대한 논의를 해서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와 우리가 대응할 기회를 맞아갈 수 있다.

규제해야 하는 혐오 표현도 있지만, 서로 토론을 통해서 오히려 혐오자들을 위축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승현)

용어 안에 다양한 경험과 인식이 녹아 들어있다.

그러한 지점에서 용어를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대응방법이 될 수 있다.

폐쇄적인 공동체에서 10대 20대 30대 같은 경우는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연대체 같은 것이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다.